

게시물 관리 규정 제정(안) 심의서

1. 규정 제정 취지

- 대학에 게시되는 각종 게시물에 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를 예방하고,
- 게시물의 효율적.합리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제정 규정

- 게시물 관리 규정

[개정전문]

게시물 관리 규정

제 정 : 2026. 0.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면학분위기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내에 설치되거나 게시되는 모든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물“이란 정보 제공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교내에 부착·설치·게시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현수막“이란 천,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제작되어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3. “인쇄물“이란 전단, 포스터, 대자보 등 종이 매체에 인쇄 또는 필기하여 게시하는 지류 게시물을 말한다. 다만, 서적 및 도서는 제외한다.
4. “게시 공간“이란 교내 게시관, 현수막 게시대, 벽면 등 본교가 관리하는 모든 게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승인부서) ① 기획관리처는 게시물 관리 및 승인 업무를 총괄한다. 단, 학과·부서·동아리 행사 및 학술행사, 학생자치기구 행사 등은 교학지원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소관 게시 공간의 게시물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학교 행사, 안전 관리, 환경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일시적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설치) ①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게시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에 관한 중대한 사항

2. 게시물로 인한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게시물 게시 원칙 및 승인

제8조(게시물 관리 원칙) 게시물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교육·연구 및 대학 운영 목적에 부합할 것
2. 관련 법령 및 대학의 교육목표에 위반되지 않을 것
3. 게시 장소, 규격 및 게시 기간을 준수할 것
4. 교내 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

제9조(게시물 게시 신청 및 승인) ①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교 전체 공식 행사 및 홍보 관련 게시는 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게시 신청 시 게시 목적, 내용, 게시 장소, 게시 기간 및 규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학생 행사의 경우 행사 및 집회계획서에 게시물 내용을 기재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게시 허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가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제10조(게시 장소 및 규격)

① 게시물은 본교에서 지정한 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에 한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게시물의 규격은 각 게시 공간의 지정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게시 기간) ① 게시물의 게시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외 대학 홍보 및 주요 성과 관련 게시물: 최대 30일
2. 학과·부서·동아리 행사 및 학술행사 게시물: 최대 15일
3. 학생자치기구 행사 게시물: 최대 15일
4. 외부 기관 홍보 게시물: 최대 15일
5. 기타 게시물: 기획관리처장과 협의 후 결정

② 이외에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게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게시 제한 게시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게시를 제한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모욕하는 내용
3. 대학의 교육목표에 반하거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내용
4.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사전 승인된 경우는 제외)
5. 정치적·종교적 선전 목적의 게시물(학술·공익 목적은 제외)
6. 음란·폭력·협오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7. 게시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게시물

제4장 게시물 철회 및 책임

제13조(게시물 철회) 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철회할 수 있다.

1. 승인받지 아니하고 게시한 게시물
2.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게시한 게시물
3. 게시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
4. 제9조에 해당하는 게시물

② 철회된 게시물은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 ① 승인받지 않은 게시물 또는 부적정한 게시로 인해 시설물이나 조경수가 파손 또는 훼손 시 게시물의 소유자와 게시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불법 게시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나 불이익은 모두 게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26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